

선산·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3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2007. 11. 1 선산·봉곡 도서관이 동시에 개관된 후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제 및 인원 증가 불가 방침에 따라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
- 시민들은 도서관을 통해 교육, 문화서비스를 향유하려는 기대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더 전문화된 경영기법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에 위탁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현황

구 분	선 산 도 서 관	봉 곡 도 서 관
위 치	선산읍 동부리 318- 3번지	봉곡동 197번지
규 모	대지 4,576㎡(1,384평) 건물 2,942.27㎡(890평) 지하1층/지상3층	대지 11,837.30㎡(3,580평) 건물 4,825.97㎡(1,460평) 지하1층/지상3층
재산표시 및 위탁대상	[별표 1] 참조	[별표 2] 참조
착 공 일	2005. 12. 28	2005. 11. 09
건축준공일	2007. 05. 16	2007. 05. 28
조경공사	2007. 10.	2007. 10. 6

나. 위탁시기 및 범위 등

- 시 기 : 2009. 5. 1
- 범 위 : 선산·봉곡도서관 시설 및 관리운영 전반

○ 기 간 : 2년

☞ 회계연도를 기준하기 위하여 첫 회에 한하여 2010. 12. 31
(1년 8개월)로 한다.

다. 운영전출금 : 1,467백만원

○ 운영 전출금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인건 비	공공 요금	지 급 수수료	일반 운영 비	당직 비	시설물 유지 관리비	도 서 구입비	문 화 강좌 등 영
계	1,467	961	144	13	129	16	23	153	28
선 산	617	391	57	6	58	7	8	76	14
봉 곡	850	570	87	7	71	9	15	77	14

※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요구액

※ 도서관 위탁관리 운영인원 : 23명

• 선산도서관 9명 (일반직 4, 업무직 5)

• 봉곡도서관 14명 (일반직 5, 업무직 9)

⇒ 청소, 경비용역, 사서보조 등 현업직 활용 : 8명(선산4, 봉곡4)

라. 수탁기관 : 시설관리공단

3. 참고자료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
다.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

[별표 1]

선산도서관 재산의 표시 및 위탁시설현황

□ 재산의 표시

- 위 치 :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18-3번지 일원
- 부지면적 : 4,576.m² ○ 소유자 : 구미시
- 용도지역 :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(도서관)
- 시설규모
 - 건축연면적 : 2,942.27m²(지하1층/지상3층)
 - 건축구조 : 철근콘크리트스라브(지하 1층 ~ 지상 3층)
 - 주차시설 : 60면

□ 위탁시설현황

구 분	시 설 물 조 서	비 고
○ 건축물	• 서고(2)/ 기계실/ 전기실/ 디지털실/ A.V자료실/ 어린이열람실 • 모자열람실/ 시청각실/ 종합자료실/ 사무실/ 회의실/ 일반열람실	
○ 통신·전기 소방·기계 설비	• 전관방송용시스템/ 키폰주장치/ 디지털전화기(4)/ 일반전화기(6) • 원격앰프/ 스피커(77)/ 음향시설/ 방송단자함(22)/ 발전기 • 판넬(6)/ 스테인레스가로등(7)/ 수목경관등(9)/ 분수대외곽등(4) • 소화전펌프/ 소화용수탱크/ 옥내소화전함 (7)/ 방화샷다연동제어함 • 방송샷다(13)/ 소화기(10)/ 보일러(6)/ 냉난방기(39) 매립덕트(22) • 실외기(14)/ 기름탱크/ 시로코펜/ 소화수조	
○ 관리용품	• 모빌랙 및 복식 서가(144)/ 신문열람대(22)/ 캐비닛(16)/ 소파(48) • 컴퓨터/ 열람테이블외 5종 (84)/ 열람의자의 8종 (384)/ 학생용사물함(10)/ AV검색대의 2종(19)/ 분실방지기 듀얼(2)	
○ 도 서	• 나무를 심은사람외 28,153권	
○ 신 문	• '07신문(26)/ '08신문(336)/ '09신문(58)	
○ 잡 지	• '07잡지(64)/ '08신문(1,016)/ '09신문(179)	
○ 조 경	• 상록수(41)/ 교목(80)/ 관목(2,723)	
○ 부대시설	• 바닥분수대/ 야외파고라/ 산책로/ 주차장(60면)	

[별표 2]

봉곡도서관 재산의 표시 및 위탁시설현황

□ 재산의 표시

- 위 치 : 경북 구미시 봉곡동 197번지
- 부지면적 : 11,837.30㎡ ○ 소유자 : 구미시
- 용도지역 :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(도서관)
- 시설규모
 - 건축연면적 : 4,825.97㎡(지하1층/지상3층)
 - 건축구조 : 철근콘크리트스라브(지하 1층 ~ 지상 3층)
 - 주차시설 : 60면

□ 위탁시설현황

구 분	시 설 물 조 서	비고
○ 건축물	• 서고/ 기계실/ 발전기실/ 유아열람실/ 어린이열람실(2)/ 아동 강의실/ 강의실(2)/ 전산교육장 / 성인열람실 / 탐구학습실 / 종합 자료실/ 디지털실	
○ 통신 · 전기 소방 · 기계 설비	• 흡수식냉온수기외 2종(3)/ 펜코일유니트외6종(7)/ 지하저수조 • 향온함습기/ 냉각탑(2)/ 중앙감시장치외6종(7)/ 발전기 • SS판넬외6종(7)/ 태양열인버터자동제어용PC(2)/ 태양모듈252) • 경관조명(7)/ 간판타이머(3)/ 키폰전화기(5)/ 일반전화기(8) • 전관방송앰프/ 컬럼스피커외 2종(87)에어컨디셔너/ 시정홍보용PC(2) • 소화주펌프외2종(3)/ 소화전외4종(5)/ 완강기/ 방화샷다(8)	
○ 관리용품	• 모빌랙 및 복식 서가(213)/ 신문열람대(23)/ 캐비닛(42)/ 소파(120) • 컴퓨터/ 열람테이블외31종(211)/ 열람의자외 6종(435)/ 사물함6) •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/ AV검색대외 7종(26)/ 분실방지기 듀얼(2) • 화장실 청소기	
○ 도 서	• 신나는 영어일기외 46,021권	
○ 신 문	• '07신문(34)/ '08신문(348)/ '09신문(60)	
○ 잡 지	• '07잡지(80)/ '08신문(1,116)/ '09신문(205)	
○ DVD 및 전자책	• DVD : 디즈니 고전명작외 160종 • 전자책 : 조선왕조	
○ 부대시설	• 매점/ 농구장/ 산책로/ 주차장(60면)	

□ 도서관 전경도
《선산도서관》



《봉곡도서관》



《관 계 법 령》

□ 지방자치법 제104조

○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

○ 제19조(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시간)

①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

1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
2.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

□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○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, 검사,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□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

○ 제20조(도서관의 위탁운영)

-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(이하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며,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도서관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